

##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9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신청인	상호(명칭)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(전화번호: )
	등록기준지(대표자)	

사업의 종류	운항개시예정일
항로	운항횟수

사업의 개요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

「해운법」 제24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 해양수산부장관(지방해양수산청장)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(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, 「선박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 1부 2. 사업계획서(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) 1부	수수료 내항: 1만원 외항: 2만원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	1.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(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, 「선박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#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#### 처리절차

